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가단2031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4505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가단203123 판결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5. 8. (피고 1, 2에 대하여)

2015. 6. 12. (피고 3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5. 6.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18,644원과 그 중 90,304,399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4. 8.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4. 8. 19. 접수 제22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1.경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경남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는 바람에 2014. 10. 28. 경남은행에 91,081,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는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4. 10.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고,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13,990원이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 당일에 776,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하였는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55원이다.

다. 한편 피고 B는 처형인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2014. 8. 19. 접수 제22364호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는 위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0,818,644원(= 대위변제금 잔금 90,304,399원(= 91,081,109원 - 776,710원) + 확정지연손해금 255원 + 법적절차비용 513,99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금 90,304,3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28.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3. 31.까지는 약정의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8. 11.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을 뿐, 자신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4. 8. 11.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덕

별지